

제5장 실험동물의 반출

1. 실험동물실에서 사육 중인 동물을 사육실 밖으로 반출하여 실험(해부, 안락사, 부검, 이동)하려면 "실험동물반출신청서"(붙임1 또는 위원회홈페이지 실험동물반출신청서)를 반출일 하루 전까지 담당 사육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모든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실 내 지정된 공간에서만 실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반출장소와 사유를 "실험동물반출신청서"에 기재하고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3. 실험동물 반출은 반출일의 오전 9시 ~ 오후 5시 사이에 사용자가 케이지를 Pass Box를 통해 반출한다. 단, 휴일 및 일과시간 외 반출은 관리자와 별도 협의 후 조정한다.
4. 실험동물실에서 사육 중이던 동물을 반출한 후에는 실험동물실로 재반입 할 수 없다.
5. 반출된 케이지는 당일 18:00까지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일반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별도의 사유와 기간을 기입하여 관리자에게 승인 받도록 한다.
6. 실험동물 반출 시 "실험동물 반출 관리대장"(붙임3)을 작성하고 케이지에 부착되어 있는 태그지에 별도 표시한다. 표시방법은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수행한다. 또한 반납 시 반출대장에 반납표시를 하도록 하며, 태그표는 태그표보관함에 반납한다. 규정 미 준수 시 최대 2주간 실험동물실 출입제한 및 위원회홈페이지 접속이 통제 될 수 있다.
7. 실험동물실 외부에서 실험대기 중인 실험동물은 악취발생과 동물 취급부주의로 인한 실험동물의 탈출 방지를 위해서 Clean Bench 내에서만 보관한다.
8. 외부기관으로 실험동물을 반출할 경우에는 외부반입 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 검토한 후 반출 준비한다.
9. 외부기관으로 동물 반출할 경우, 실험동물은 수송도중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운반상자에 넣어 분양하여야 하며, 수송이 장기간을 요할 시에는 수송기간에 필요한 사료 등을 운반상자에 넣어야 한다. 운반상자에는 동물명, 계통, 주령, 성별, 유전자 변형 유기체 등을 기재한다.
10. 신청인은 분양동물의 생리, 생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수송 수단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